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62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김선교 · 김예지

이종배 • 조지연 • 고동진

서천호 · 강승규 · 김정재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,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,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%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.

또한,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,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·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,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,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 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489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정부는"을 "농림축산식품부는"으로 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은 상생기 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10년간"을 "20년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	제18조의2(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
설치 등) ① · ② (생 략)	설치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
	<u> </u>
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	3
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, 그 밖	
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. <u><후</u>	
단 신설>	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
	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은 상
	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
	<u>야 한다.</u>
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	4
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, 상생기	
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<u>정부</u>	<u>농</u>
<u>는</u>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	<u>림축산식품부는</u>
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	
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	
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
	<u>.</u>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	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
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	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
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18조의2제4항	제2조(유효기간)
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	
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.	- <u>20년간</u>